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

의안 번호	2958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: 2024. 5.

제안자: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

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

구분	성명	직업·직위	출석 일시
증인	이진화	종로문화재단 미래문화사업단장	2024. 6. 10. 15:00

나. 출석·감사 장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
- 「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57조 및 제60조

나. 출석요구서: 따로 붙임

수신 : 이진화(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41(백강빌딩 4, 5층)
발신 : 종로구 삼봉로94 94빌딩 종로구의회

증인 출석요구서

이진화 귀하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,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출석일시 : 2024년 6월 10일 오후 3시
- 출석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
(종로구 삼봉로94 94빌딩 10층)
- 요구사유 : 종로문화재단 미래문화사업단장 업무 관련

- 미래문화사업단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단장의 역할
-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플러스카페 폐지 관여 사항
- 미래문화사업단장 업무 수행 적절성 등

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사담당 ☎ 02-2148-3844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☎ 02-2148-3864

2024년 6월 3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(인)